

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지난 9월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.
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시장 및 구청장의 관련 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또한 전세사기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,
시장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상담과 작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시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

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
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규정하여
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